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제도 도입

거시경제 동향

2012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

기획 정보

중국 식품안전과 관리제도의 문제점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농업구조 및 농가경제 요약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주요 농정 이슈_1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

※ 본 자료는 5월 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필요성

- 본 시행령(안)은 총 20조(부칙 제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정절차 상 필요사항을 규정
- 법 시행은 12월 1일로 7개월여 남았으나, **‘협동조합’ 법인격 도입 전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조기에 입법예고 실시**
 - ※ 의원입법 형태로 법률안 상정('11.11.2일, 기재위), 2개월여 만에 제정법이 통과('11.12.29일)되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더 많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황**
 - ※ 협동조합을 지향하지만 법인격이 없는 자활공동체, 돌봄노동 등의 사업체수는 전국적으로 약 4~5천여 개로 추정(협동조합연구소 자료)되어 시행령 관련 많은 의견 개진 예상

□ 제정안의 주요내용

- **(유사명칭 사용 금지_시행령 제2조)** 상호간의 오인·혼동 방지를 위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동일 명칭 등기 불가
- **(권한의 위임 및 위탁과 협동조합정책심의회_시행령 제4조, 제19조 등)**
 -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설립(법 제15조)
 -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인격인가 외에 사업인·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므로 **관계부처(사업담당부처)에서 법인격인가까지 동시에 수행**함이 국민편의에 유리하여 관련 권한을 관계부처에 위탁

-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감독 권한을 관계부처로 위탁함에 따라 통일적인 정책수행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 심의회를 설치·운영

※ 협동조합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감독 관련사항,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제도 정착에 기여

-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설립의 주목적이 교육·홍보·지도 등(법 제80조)이므로 기본법 제정 취지대로 총괄부처인 재정부가 신고·인가 등을 수행

○ (공정거래법 적용배제_시행령 제7조)

- 협동조합도 영리행위를 수행하는 사업조직이므로 상법 상 법인과 형평성 있게 규율할 필요가 있어 공정거래법을 적용 받음.
- 다만, **소액·소규모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함.

※ 적용배제 요건

- ①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 ②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 ③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 ④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 이 외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적용배제 요건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추후 협동조합 특례 인정이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

○ (임직원 겸직 허용범위 설정_시행령 제12조)

- 임원(조합원의 대표)과 직원(직원의 대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임직원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
-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거나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임직원 겸직이 불가피하므로 임원 전원의 직원 겸직 허용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설립목적이 공익실현인 점을 감안하여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임원의 3분의 1까지 직원 겸직 허용

○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_시행령 제13조)

- 협동조합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만 이용 가능하나,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인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해서는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허용
-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의 경우,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응급환자, 수급자 등의 사업이용 가능

○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_시행령 제17조)

- 소액대출 이자율은 정기에금리를 참작하여 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개인별 소액대출 한도는 100만 원으로 함.
- 개인별 상호부조 한도는 100만 원, 상호부조회비는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주요 농정 이슈_2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제도 도입

※ 본 자료는 5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서비스 등급 도입된다」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정 이유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 및 서비스 등 수준을 차별화하여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등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 본 회의 통과(‘12.5.2)
- 그 동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수행해 오던 도시민이 농어촌 체험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기관 인증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

□ 주요내용

-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제도 도입_안 제13조)
 - 현행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이외에 농어촌민박을 평가 대상에 추가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3개 사업을 농어촌관광사업으로 정의
 - 농어촌관광사업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결정제도를 신설
- (지방이양 대상 사무 지자체 이양_안 제17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9조 제1항제2항, 제25조 제2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행하던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업무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 및 인증취소 등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
 - 홍보 및 조사·연구업무는 농식품부 장관 이외에 지자체장도 함께할 수 있도록 포함

- (농어촌관광사업 평가 및 등급결정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임·위탁_안 제26조 제2항 제1호)
 - 현행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평가 이외에 농어촌민박사업 평가를 포함한 등급결정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임·위탁
 - ※ 전문기관: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비영리민간단체

거시경제 동향

2012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

※ 본 자료는 5월 8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총괄

○ **2012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 동월대비 2.4% 상승

- **농림수산물**: 채소류와 과일류 및 축산물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3.5%** 하락
- **공산품**: 1차 금속제품은 하락하였으나,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석유제품 등이 올라 전월대비 0.2% 상승
- **서비스**: 운수, 전문서비스, 기타서비스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2% 상승

< 수출물가지수 등락률 >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12.1월	2월	3월	4월	'12.1월	2월	3월	4월
총 지 수		1000	0.7	0.7	0.6	-0.1	3.4	3.5	2.8	2.4
농 립 수 산 품		43.6	0.5	4.3	1.4	-3.5	-8.0	-4.4	-3.1	0.2
곡	물	11.0	0.7	0.3	0.1	0.2	15.8	13.1	9.3	6.1
채	소	7.4	10.7	7.6	10.6	-6.0	-14.4	-2.5	3.7	27.3
과	실	5.3	11.1	10.6	2.1	-2.6	-19.6	-9.1	-2.6	-4.9
축	산 물	12.0	-9.8	-0.3	1.4	-2.9	-14.0	-15.0	-16.7	-14.5
수	산 식 품	5.3	-1.2	-0.3	0.2	-0.2	-8.6	-8.6	-8.5	-11.3
공 산 품		644.8	0.7	0.7	0.7	0.2	4.7	4.3	3.1	2.5
석	유 제 품	59.7	2.0	2.2	2.6	0.8	14.6	15.2	10.6	8.1
화	학 제 품	55.2	2.6	2.8	1.6	0.6	4.3	4.0	2.8	1.7
1차	금 속 제 품	65.6	0.3	1.3	0.4	-0.4	1.6	1.2	0.2	-0.1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93.7	0.0	-0.3	-0.3	0.7	-4.2	-4.8	-5.0	-2.9
전 력 · 수 도 · 가 스		44.5	0.1	0.2	0.4	-0.2	10.2	10.3	10.8	10.1
서 비 스		264.4	0.9	0.0	0.2	0.2	1.3	1.3	1.3	1.0
운	수	61.6	0.4	-0.3	0.3	0.8	2.5	2.1	2.4	2.2
금	용	27.4	2.2	0.7	0.0	-1.2	-3.8	-1.9	-2.1	-5.1
전 문 서 비 스		43.3	1.9	0.2	0.2	0.1	3.6	3.5	2.9	2.9
기 타 서 비 스		31.1	1.4	0.2	0.4	0.3	2.9	3.0	3.3	3.2

□ 특수분류별

- **식료품**은 전월대비 **1.3%**, 신선식품은 **3.9%** 하락
- 에너지는 전월대비 0.8% 상승, IT는 보합
- **신선식품 및 에너지 이외**는 전월대비 **0.1%** 하락

< 특수분류 지수 등락률 >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12.1월	2월	3월	4월	'12.1월	2월	3월	4월
식	료 품	81.3	0.4	1.5	1.7	-1.3	-1.8	0.0	0.4	2.1
식	료 품 이 외	918.7	0.7	0.6	0.5	0.1	4.0	3.8	3.0	2.4
신	선 식 품	16.4	8.5	7.3	6.5	-3.9	-19.0	-10.0	-4.6	3.2
신	선 식 품 이 외	983.6	0.6	0.6	0.4	0.1	4.0	3.8	2.9	2.4
에	너 지	93.8	1.0	1.1	1.6	0.8	13.0	13.3	10.7	9.3
에	너 지 이 외	906.2	0.7	0.7	0.4	-0.2	2.2	2.1	1.7	1.4
I	T	175.1	0.1	0.0	0.0	0.0	-2.1	-2.3	-2.4	-1.8
I	T 이 외	824.9	0.8	0.8	0.7	-0.1	4.2	4.2	3.5	2.9
신	선 식 품 및 에 너 지 이 외	889.8	0.4	0.6	0.3	-0.1	2.8	2.5	1.9	1.4

<참고> 생산자물가지수 분류별 품목수 및 가중치(2005년 기준)

구	분	품목수	가중치
총	지	884	1000.0
	상	801	735.6
	농 립 수 산 품	55	43.6
	광 산 품	9	2.7
	공 산 품	728	644.8
	전 력, 수 도 및 도 시 가 스	9	44.5
기	서 비 스	83	264.4
	식	131	81.3
	식 료 품 이 외	753	918.7
	신 선 식 품 ¹⁾	34	16.4
	신 선 식 품 이 외	850	983.6
	에 너 지	20	93.8
	에 너 지 이 외	864	906.2
	I T	98	175.1
	I T 이 외	786	824.9
	신 선 식 품 및 에 너 지 이 외	830	889.8

주: 1) 채소(15개), 과일(8개), 수산식품(11개)

기획 정보

중국 식품안전과 관리제도의 문제점

※ 본 자료는 3월 23일 농진청에서 발표한 「World Focus의 “중국 식품 안전한가?”」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중국의 식품안전 현황

- 중국의 WTO 가입 직후(2002년), **식품 생산액**은 1조 위안을 조금 넘는 정도였으나, **2009년엔 약 5조 위안을 달성해 7년 만에 5배나 증가함.**
 - 도시를 중심으로 **식생활의 고도화와 다양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식품 가공업의 생산액이 크게 증가함.
 - 또한, 식품유통도 시장 이외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을 통한 판매가 늘어나**면서 **고급 식자재 등의 유통망 정비**도 추진
- 하지만 잔류농약, 불법 첨가물 사용, 중금속오염 등에 의한 유해·유독식품 문제가 끊이지 않아 **식품안전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음.
 - 유해식품과 더불어 **유통단계에서의 표시위반식품, 가짜식품**(포장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횡행**
 - ※ 대기와 토양오염으로 중국의 하천수 70%가 오염되었고, 40%는 ‘기본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태’라고 함.
 - ※ 쌀의 경우, 토양오염 때문에 카드뮴, 동, 아연에 의한 복합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쌀의 10%는 카드뮴 오염 기준치 상회

< 외국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받은 중국식품의 오염 사례 >

- **(축산물 또는 수산물)** 금지 사료첨가물 사용, 동물용의약품의 초과 잔류, 항생물질 검출 등
- **(채소, 과일)** 고독성 농약검출, 농약 초과 잔류 등 농약, 동물용의약품, 첨가물 등의 남용 및 불법 사용

□ 중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대응-식품안전법 제정-

1. 배경

- 개혁개방 이전의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 **중국의 식품정책**은 품질보다는 **양적 물량 확보에 중점**을 둬.
 - 이로 인해 **식품위생은 경시**되었고, **식품위생에 관한 제도적인 정비도 미비**했으며, **국민들의 위생관념도 희박**
- 중국에서 수출된 식품이 각국의 **안전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수입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식품수출에 커다란 장해요인**으로 작용
-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미국은 1997년에 대통령식품안전계획을 수립했고, EU는 2000년에 “식품안전백서”를 공표하는 등 2000년을 전후로 식품 안전에 관한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됨.

2. 식품 안전관련 법령 제정 현황

- **(수출 식품)** 중국은 수출 식품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자국의 수출 식품의 **품질향상에 크게 주력하면서 제도적 장치 마련**
 - 2002년에 ‘수출입상품검사법’ 제정 및 수출상품 생산기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출식품생산기업 위생등록등기관리규정’ 마련
 - 수출입 검사를 하는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 산하에 **전국 35개의 직속검사검역국이 설치**되어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체제와 인원, 시설 등을 급속히 정비
- **(내수 식품)** 중국의 ‘식품 위생법’은 1995년에 시행된 이후 식품안전 관리의 근간을 이루어 왔음. 하지만 경제발전이 거듭되면서 **식품안전 관리의 결과와 사회적 폐단이 점차 심해지자 ‘식품 위생법’을 폐지**하고 **‘식품 안전법’을 제정**하여 식품의 전 과정 감독제도, 식품안전 통일표준 제도, 불합격한 식품 리콜제도 등 **다방면에 걸친 새로운 제도 마련**
 - (식품안전법) 2007년 12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 시작, 2009년 2월에 가결되어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새롭게 제정된 '식품 안전법'은 크게 ① 통일된 식품안전 국가기준 마련, ② 전 과정의 감독제도 도입, ③ 불합격 식품에 대해 리콜제도 실시의 3가지 특징을 지님.

※ 국무원에 식품안전위원회가 설치되고, 국무원 부총리가 위원회 주임을 맡게 되면서 중국에서는 중앙지도자가 직접 식품안전 문제를 지도하는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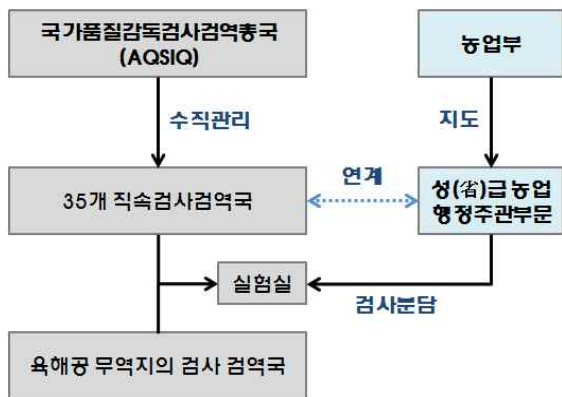
□ 중국 식품안전 관리체도의 한계

1.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산하 직속 지방기관의 부재

- 위생부는 중국 국내에서 식품위생을 주관하고, 식품위생검사 등을 실시하며, 농업부는 도매시장 등에서의 농산물 품질검사 등을 실시함.
- 하지만 이 두 부서 모두 **식품검사를 지방에서 실시하기 위한 직속 지방 기관 부재**

※ 이는 수출입검사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의 직속 검사 검역국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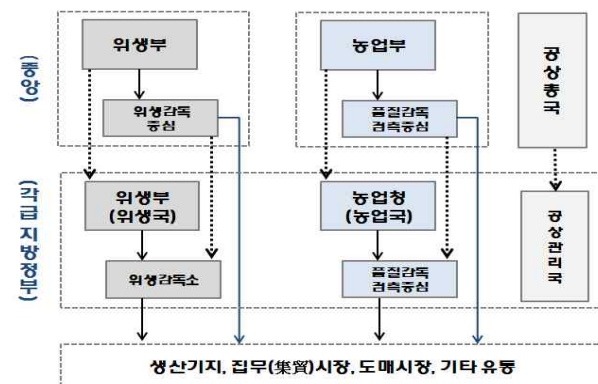
< 중국의 수출입 식품안전 검사체계 >



2.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지방정부의 재원 부족

- 각급 지방정부에 설치된 위생청과 농업청이 각각 식품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과 인원 등이 지방정부의 부담**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인력 운영 및 관리체계가 상이**
- 더욱이 최근 들어 **지방정부들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업무실시 정도와 기술수준은 부족해지기 쉬운 상황**
- 중국에서는 농민의 농약사용에 관한 지도관리 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잔류농약문제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중국 국내의 식품안전 검사 체계 >



3. 생산자 및 기업의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도덕적 해이

- 중국에서 사회적인 영향이 **큰 유해식품사건**은 대부분이 **생산자·기업의 도덕성 결여에서 초래**
- 이는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의 엄정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미 정착**되었기 때문임.
- **중국 정치 체제의 특성** 상, 식품안전성에 대해 **민간인들이 단체를 조직하여 개선을 요구하거나 비판하는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따르는 것도 식품안전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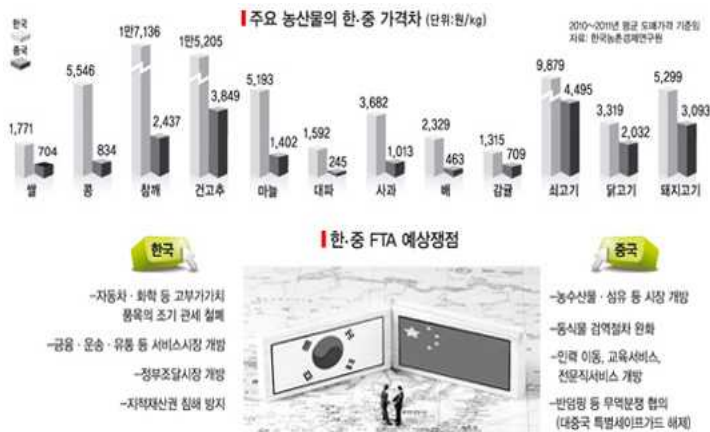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5월 7일~11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안·중 FTA 협상개시] 중국농업 어떻게...

- 중국 농산물 생산비 우리나라의 20~30%...계절·농업구조도 한국과 유사.
한·중 FTA 체결로 우리나라 채소·과일·잡곡에 막대한 피해 예상. 농경연
한국과 중국의 주요 농산물 31개의 '10~11년 도매가격 비교 결과, 28개
품목에서 우리 농산물의 가격이 중국산보다 2배 이상 높음<그래프 참조>.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이 14억1,000만 달러('00년) → 32억3,000만 달러 ('10년)로 두 배 이상 증가.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폭도 같은 기간 12억9,000만 달러 → 26억7,000만 달러로 확대. 수입채소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은 37%('97년) → 73%('10년). 고추·마늘 같은 주요 채소는 95% 이상이 중국산이며,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부작용도 심각

자료: 농민신문(2012.5.7).

□ 소비자 72% '광우병 불안감에 쇠고기 꺼려져'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미국 광우병 발생과 관련 500명 대상 소비자 설문결과(4.30)...광우병 발생 이후 쇠고기 소비가 꺼려지나는 질문에 72.2%가 그렇다고 답변. 쇠고기의 소비를 줄이는 이유로는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31.4%), 원산지 둔갑판매에 대한 우려(25.8%), 쇠고기 안전성 의심(21.3%), 정부의 쇠고기 검역시스템에 대한 불신(19.4%) 때문이라고 답변해 미국산 쇠고기 뿐 아니라 한우소비에도 큰 부담 작용. 한우의 차별화된 안전성 홍보와 원산지 둔갑판매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필요

자료: 축산신문(2012.5.9).

□ 환경부, 무허가·미신고 축사시설 폐쇄조치로 축산 내몰리나

- 환경부, 5.7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무허가 및 미신고 축사시설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 명령을 내릴 방침. 사용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사육제한 규제가 한층 강화. 사용중지명령은 위치와 관계없이 과징금 부과, 폐쇄명령은 입지·건축허가(용적률) 등에 따라 이뤄질 방침으로 과징금 대상은 아니며, 농가들이 축사 규모를 조정하는 등 대책 마련 유예기간 정하고, 사육규모와 가축분뇨 배출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정해질 계획. 올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내년 법 공포 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2014년 시행. 따라서 과징금 부과 방침은 법 공포(2013년) 후 유예기간 2년이 지난 2015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12.5.10).

□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원체계 개선 필요

-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구난방 식으로 집행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부지원체계 개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5.3일 '전통시장육성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 지원한 규모는 '02~'11년까지 총 1조5,711억 원. 하지만 이중 시설현대화에 사업예산의 대부분인 1조3,513억 원이 지원되는 등 유통기능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은 부족하고, 예산집행률 63.6% 그쳐 저조, 지원 범위·내용 명확한 규정 없고 상인 노력도 부족. 지자체의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과 중소기업청 사업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사업추진 방안 시급

자료: 농수축산신문(2012.5.11).

□ 농업정책자금 '농업경영외생자금' 이란...

- 정부, 올해도 경영난에 빠진 농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농업경영외생자금* 600억 원 지원
- ※ 재해와 가축질병, 농산물값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업인의 기존 채무를 연리 3%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의 장기저리자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이 자금은 '03~'11년까지 7,928농가에 4,424억 원 지원

< 농업경영외생자금 지원기준 >

부채 기준	농업용 부채가 있는 경우
농업 재해 범위	한해·수해·풍해·냉해·우박·서리·조해·눈피해·동해·병충해·일조량 부족·유해 야생동물 피해, 농산물값 15% 이상 하락 등
준전업농 기준	미곡·밭작물 1.5ha 이상, 노지채소 1ha 이상, 과수 0.75ha 이상, 현우번식우 33마리 이상, 비육우 25마리 이상, 젖소 25마리 이상(축우마릿수 기준), 돼지 500마리 이상(아미돼지 기준 50마리 이상), 닭·오리 1만5,000마리 이상, 산림경영은 조림면적 기준 5ha 이상 등

자료: 농민신문(2012.5.11).

연구 지원 정보

농업구조 및 농가경제 요약표

※ 본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업총조사 결과」와 「2011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서 발췌한 것임.

□ 농업구조 변화

구 분	단 위	1995	2000	2005	2010
농가 수 (전체가구 대비 비중)	천 가구 (%)	1,501 (11.6)	1,383 (9.7)	1,273 (8.0)	1,177 (6.8)
농가 인구 (전체인구 대비 비중)	천 명 (%)	4,851 (10.9)	4,031 (8.8)	3,434 (7.3)	3,063 (6.4)
○평균 가구원	명	3.2	2.9	2.7	2.6
○성비		95.8	95.7	95.4	96.1
○중위연령	세	45.1	49.9	54.1	55.7
○연령별구성 -0~14세	%	14.0	11.4	9.8	8.8
-15~64세		69.8	66.9	61.1	59.4
-65세 이상		16.2	21.7	29.1	31.8
경영주					
○평균연령	세	56.3	58.3	61.0	62.3
○연령분포 -40대 이하	%	27.9	23.8	17.9	14.7
-60대 이상		42.3	51.1	58.3	60.9
경영 구조					
○전·겸업별 -전업 농가	%	56.6	65.2	62.6	53.3
-겸업 농가		43.4	34.8	37.4	46.7
○경지규모별 -농가당 경지면적	ha	1.10	1.16	1.19	1.23
○경영형태별 -논벼위주 농가	%	54.9	56.9	50.9	44.4
○농축산물 판매규모별 -1,000만 원 미만	%	70.8	69.2	68.3	67.8
-3,000만 원 이상		4.5	6.5	10.2	12.9

□ 농가경제 현황

단위: 천 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증감률		
					'09/'08	'10/'09	'11/'10
농가소득	30,523	30,814	32,121	30,148	1.0	4.2	-6.1
○ 경상소득	26,296	27,306	28,654	27,155	3.8	4.9	-5.2
- 농업소득	9,654	9,698	10,098	8,753	0.5	4.1	-13.3
· 농업총수입	25,843	26,621	27,221	26,457	3.0	2.3	-2.8
· 농업경영비	16,189	16,924	17,123	17,704	4.5	1.2	3.4
- 농업외소득	11,353	12,128	12,946	12,949	6.8	6.8	0.0
· 겸업소득	2,900	3,296	3,467	3,653	13.7	5.2	5.4
· 사업외소득	8,453	8,832	9,480	9,296	4.5	7.3	-1.9
- 이 전 소득	5,289	5,481	5,610	5,453	3.6	2.4	-2.8
○ 비경상소득	4,227	3,507	3,467	2,993	-17.0	-1.2	-13.7
농가계지출	27,102	26,574	27,672	27,906	-1.9	4.1	0.8
○ 소비지출	20,328	20,017	21,264	22,156	-1.5	6.2	4.2
○ 비소비지출	6,773	6,557	6,408	5,750	-3.2	-2.3	-10.3
농가처분가능소득	23,749	24,257	25,712	24,398	2.1	6.0	-5.1
농가경제잉여	3,421	4,240	4,449	2,242	23.9	4.9	-49.6
농가자산	341,227	358,029	372,476	387,180	4.9	4.0	3.9
○ 고정자산	283,826	289,539	289,435	295,637	2.0	0.0	2.1
○ 유동자산	57,401	68,490	83,041	91,542	19.3	21.2	10.2
농가부채	25,786	26,268	27,210	26,035	1.9	3.6	-4.3
○ 농업용	13,600	13,150	12,930	11,892	-3.3	-1.7	-8.0
○ 가계용	6,446	7,086	7,330	7,156	9.9	3.4	-2.4
○ 겸업용	2,590	2,669	3,453	3,393	3.1	29.4	-1.7
○ 기타용	3,151	3,362	3,497	3,594	6.5	4.0	2.8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